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무역항을”을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무역항에 다음”을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무역항에 출입하는”을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무역항의”을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무역항의”를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무역항을”을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무역항에 입항하기”를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기”로, “무역항을”을 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41조의5제1항”을 “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9조제7호”를 “법 제49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2163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5조(출입 허가의 신청) <u>법 제4조제3항</u> 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출입 허가의 신청) <u>법 제4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의2(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) ① <u>법 제24조제4항</u> 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<u>무역항</u> 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용기간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다른 <u>무역항</u> 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, 그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	제10조의2(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가.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해당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으로는 제때 예선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. (생략) 다. 무역항의 운영상 사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무역항의 예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및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	1. ----- ---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----- 가.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-----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무역항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수행하려는 예선업자는 해당 <u>무역항</u>에 입항하기 전에 그 사실을 해당 <u>무역항</u>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 제24조(공매대행 수수료)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「<u>국세징수법 시행규칙</u>」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제32조(그 밖의 개선명령) 법 제49조제7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	-----. ④ ----- ----- ----- 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 <u>무역항의 수상구역등</u>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24조(공매대행 수수료) ----- ----- ----- 「<u>국세징수법 시행규칙</u>」 제78조제1항 ----- -----. 제32조(그 밖의 개선명령) 법 제49조제1항제7호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